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16 선고 2021가단1140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안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김종훈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애

변 론 종 결 2022. 11. 11.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이 2019. 1.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14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이 2019. 1. 10.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친지원 등기와 2019. 1. 10. 접수 제2604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의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과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2/4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B은 2019. 1. 10. 배우자인 피고에게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 중 2/4 지분을 각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B과 피고가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1부동산의 시가는 142,000,000원 상당이고, 제2부동산 중 2/4 지분의 시가는 136,500,000원 상당이었다.

4) 피고는 위와 같이 증여받은 후 2019. 11. 7.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C,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대한민국의 B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1) B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소외 회사는 B을 포함하여 E, F, G, H 총 5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북인천세무서장은 2019. 3. 4.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고, 신고 누락한 매출액을 소외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소외 회사의 2013년 사업연도부터 2017년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소외 회사의 자금이 사외유출되어 B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B에 대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3) 복인천세무서장은 위 소득처분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야 하나 소외 회사가 2019. 7. 10.경 폐업되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게 되자 관련법령에 따라 그 귀속자인 B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위 소득처분 사실을 B의 종합소득세 관할관청인 안산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4) 안산세무서장은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9. 12. 1.경 B에게 2013년 귀속부터 2017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지방소득세 체납액 산정 경위

1) 지방소득세는 국세(종합소득세)와 연동하여 성립하고 소멸하는 세목이다.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B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 사실을 통지받았다.

2) 이에 따라 원고가 산정한 B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1. 2. 17. 기준 합계 565,730,440원(2013년부터 2018년의 6개년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와 피고 사이의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각 증여계약은 B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조세채무를 면탈하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액을 반환하고, 제2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대한민국이 B과 피고 사이의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그에 따라 가액 반환 등 원상회복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다. 판 단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B으로부터 증여받은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의 지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피고 사이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와 중첩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 대한민국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소송’이라고 한다).

나) 관련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나57967 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고, 2022. 9. 23.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2. 10. 4. 관련소송의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142,217,160원을 국세청이 안내한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은 의사표시의무의 집행에 관하여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소송의 원고인 대한민국이 일방적으로 피고 앞으로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에 의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한다.

판사 김정아

별지

부동산 목록

1. [집합건물]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I에 있는 J빌라 K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L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 주택

1층 148.62㎡

2 내지 5층 각 163.06㎡

옥탑 11.70㎡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M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 75.68 ㎡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I 대 393.3㎡

4)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393.3분의 40.46

2. [집합건물]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N, O, P에 있는 Q건물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R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 공동주택

지2층 1,308.3017㎡

지1층 1,409.2947㎡

1층 102.7303㎡

2 내지 11층 각 839.5981㎡

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S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구조 84.7131㎡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부천시 N 대 832.5㎡

2. 경기도 부천시 O 대 725.5㎡

3. 경기도 부천시 P 전 68.6㎡

4) 대지권의 표시

1, 2, 3 소유권대지권 1626.6분의 18.85

끝.

